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2년 4월 27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5.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가.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구체화 하였으며, 2011년 9월에 개정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명문화(안 제3조 제4항)
 - 임기 2년에 연임 할 수 있도록 임기규정 명문화
- 실무위원회 운영 및 심의안건 구체화(안 제6조)
 - 실무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회의소집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타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이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규정을 명문화 함.
 - 안 제6조에 실무위원회 운영 및 심의안건 구체적으로 명시
 - 실무위원회의 심의 안건
 - 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 ②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 ③ 관제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 실무위원회 소집 :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대책 및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임기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 통합방위협의회는 전·평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한 민·관·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6 호
----------	---------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구체화 하였으며, 2011년 9월에 개정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나 표현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명문화(안 제3조 제4항)

- 임기 2년에 연임 할 수 있도록 임기규정 명문화

나. 실무위원회 운영 및 심의안건 구체화(안 제6조)

- 실무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회의소집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7조, 시행령 제8조 및 제13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3.29 ~4.8)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를 “「통합방위법」 제5조”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3호 나목 중 “민·관·군간”을 “민·관·군 간”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정한 자로”를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육군 제52사단 213연대장, 1대대장

17.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6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원”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u>」 제 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통합방위법</u>」 제 5조-----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u> -----</p>
<p>제2조(기능) <u>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2. (생략)</p> <p>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p> <p>가. (생략)</p> <p>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양양 및 <u>민·관·군간</u>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p> <p>4. <u>기타</u>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p>	<p>제2조(기능)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민·관·군간</u> -----</p> <p>4. <u>그 밖에</u> -----</p>
<p>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u>기타</u>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명 이하로 한다.</p> <p>② (생략)</p> <p>③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u>각호에 정한 자</u>로 한다.</p> <p>1. ~ 4. (생략)</p> <p><u>5. 육군제52사단213연대장, 1대대장</u></p> <p>6. ~ 16. (생략)</p> <p>17. <u>기타</u>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u>자</u></p>	<p>제3조(구성) ① -----</p> <p>-----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u>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육군 제52사단 213연대장, 1대대장</u></p> <p>6. ~ 16. (현행과 같음)</p> <p>17. <u>그 밖에</u>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u>사람</u></p>

④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9조(협회의 통합운영) 협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② ~ ③ (생략)

④기타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 하되, 그 구성원 -----.

제9조(협회의 통합운영) -----
-- 각 호 -----.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소속으로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

제13조(운영세칙) ----- 사항 외 ----- 그 밖에 -----.

